기업과 고령 노동자가 함께하는 일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응원합니다!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720만원을 드립니다!

(분기별 90만원 2년간)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고용센터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지원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요건)

-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계속고용제도' 란 무엇인가요

» 3가지 유형을 말하며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연장형**)
② 정년을 폐지 (**정년폐지형**)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 (**재고용형**)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도입하여야 합니다.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관련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어요(~ '21.12.31)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계속고용제도를 실제로 운영 중인 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급 시행일부터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

▸▸ 기존에 정년 도래 근로자 모두를 계속 고용하고 있고

▸▸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와 그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절차

- 10인 이상 : 지방관서에 취업규칙 변경신고
- 10인 미만 :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모든 근로자)

▸▸ 20.1.1~21.12.31까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한시적 적용

예시

- A근로자 : '20.12.31.
- 재고용일 : '21.1.1.
- 재고용제도 소급 가능일 : '20.1.1. 이후 ~ '20.12.31까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중소 ·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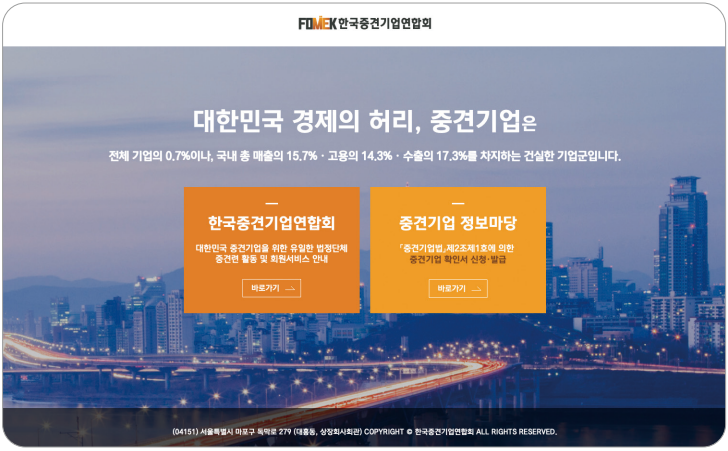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건설 · 운수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300↓,
  숙박 및 음식점업, 도 · 소매업 · 금융업 · 보험업 등 200↓,
  기타 100↓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확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

지원금액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30만원)**

지원기간 근로자별 **최대 2년간 지원**
(매분기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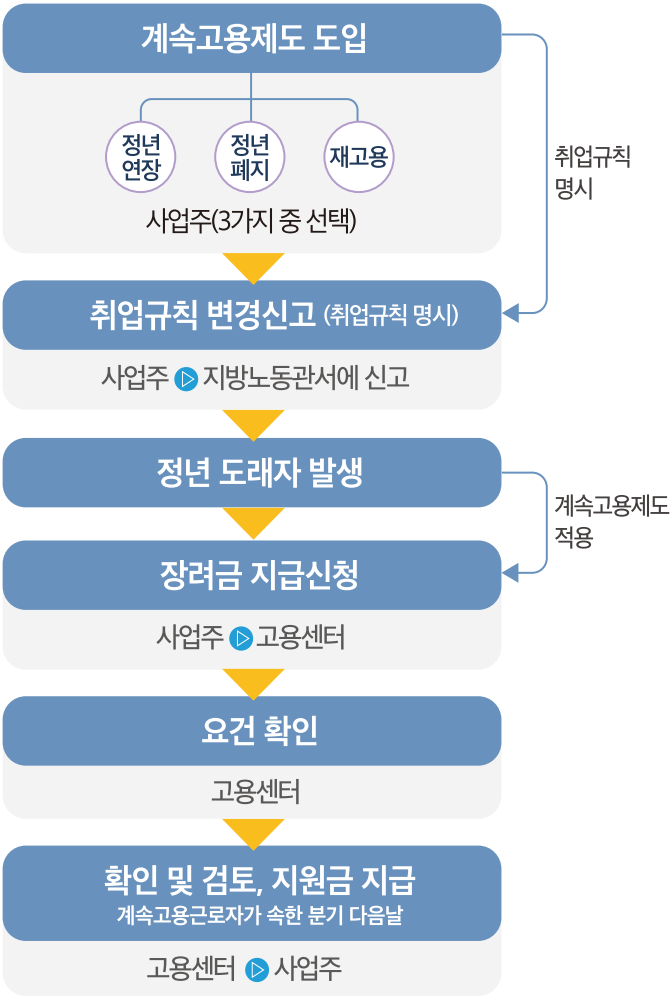
-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 고용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❶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❷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❸ 정년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후 신청(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10인미만 사업장은 정년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 (사내 인트라넷, 메일 공지 및 정년퇴직을 사유로 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이력 등)

계속고용제도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예시 계속고용제도 도입 관련 취업규칙

도입형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년 연장	회사의 정년은 사원이 만 60세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1안)** 회사의 정년은 직원이 만 63세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안)**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65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해당 월의 말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정년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하며 퇴직일을 명확히 정해야 함
정년 폐지	회사의 정년은 사원이 만 60세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① 기존 정년을 폐지한다. ② 1항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자부터 적용한다.	
재고용	• 정년퇴직 대상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계속고용 할 수 있다. • 심사를 거쳐 계속고용여부를 결정한다. •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촉탁사원으로 재고용 할 수 있다.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다만,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명시해야 함 •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회사 사정, 업무상 필요 등 재량적 고용이 아닌 의무고용임을 명시해야 함 *~~할 수 있다.(x) • 일정한 심사(근무평가 등)를 거쳐 재고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 및 평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11p 취업규칙 예시안 참고)

*본 취업규칙은 예시이며 기업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음

재고용 제도 도입 시 알아두세요

- 재고용 제도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하는 경우 재고용 할 수 있다.(X)
~~ 회사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X)

-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됩니다.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예시

①건간상의 이유 ②해당 직무가 폐지된 경우 ③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을 상실한 경우 ④**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와 같은 경영사정상 계속고용이 어려운 경우

취업규칙 작성 예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 다만,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평가를 거쳐 재고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시 일정한 심사(근무평가 등)를 거쳐 재고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제00조(정년 후 재고용제도)

① 회사는 정년에 도달한 직원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재고용 신청서를 받아, <별지 1>의 객관적 심사기준과 평가절차에 따라 해당 직원의 정년 후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객관적 심사 결과 총점이 00점 이상인 자는 1년 이상의 단위로 근로 계약을 연장한다.

③ 다만, 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속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년퇴직 전(前) 재직기간 중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징계를 00회 이상 받은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집행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형 집행 전이라도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이로인하여 당해 업무의 수행, 회사의 이미지나 명예, 위계 질서나 분위기 등을 저해하는 경우
3. 신체나 정신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당해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다른 근로자와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종전에 담당했던 업무가 폐지 과정에 있거나, 폐지될 예정인 경우
5. 기타 회사의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1>

평가항목	심사기준 00 점				
	1	2	3	4	5
1. 정년퇴직 전 상사/동료/부하직원 평가					
2. 정년퇴직 전 고객 및 거래처 등 제3자 평가					
3. 정년퇴직 전 근무 태도 (지각/조퇴/결근 등)					
4. 정년퇴직 전 업무 전문성(지식/경험 등)					
5. 정년퇴직 전 업무 효율성(업무량/처리속도/불량률 등)					
6. 정년퇴직 전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및 책임감					
7. 정년퇴직 전 회사 내부 및 업무관련 대외적 포상 여부					
8. 정년퇴직 전 징계(유무 및 정도에 따라 감점방식)					
9. 정년퇴직 전 지시복명/의사소통/업무협력의 정도					
10. 신체적·정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					
종합 평가	총 / 100점				

Q&A

Q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A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A 제도 시행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 때부터 변경된 제도(정년 연장 및 재고용)를 적용받으므로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정년이 없던 사업장이 정년을 새로이 설정한 경우 지원되나요?

A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 도래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년이 없거나 정년을 폐지한 기업이 새로이 정년을 도입하는 경우 정년이 없었던 때보다 고용이 연장된 것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지원이 되나요?

A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계속고용장려금과 지원 목적 및 취지가 다르므로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Q 계속고용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만약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소급해서 명시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소급 명시하는 경우 '21.12.31.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없는 10인 미만의 기업은 정년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 정년 나이, 퇴직일, 시행일 등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 내부 지침 및 시달 공문 등과 함께 당시 정년 규정에 따라 운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에는 정년 운영 당시 사내 인트라넷 게시 및 전체 메일을 통한 공지, 정년퇴직을 사유로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한 이력 등이 있으며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의처

센터명	연락처	센터명	연락처
서울고용복지+센터	02-2004-7371	대구고용복지+센터	053-667-6006
서초고용센터	02-598-4940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053-605-6477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02-3468-4703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053-605-9518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02-2142-8924	대구칠곡고용복지+센터	054-970-1906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02-2077-6004	포항고용복지+센터	054-280-3055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02-2639-2499	경주고용복지+센터	054-778-2516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800	구미고용복지+센터	054-440-3360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02-3282-9233	영주고용복지+센터	054-639-1146
인천고용복지+센터	032-460-4672	문경고용복지+센터	054-559-8257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032-540-5641	안동고용복지+센터	054-851-8062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032-540-2001	광주고용복지+센터	062-609-8660
부천고용복지+센터	032-320-8974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062-960-3201
김포고용복지+센터	031-999-0940	전주고용복지+센터	063-270-9210
고양고용복지+센터	031-920-3957	정읍고용복지+센터	063-530-7501
의정부고용복지+센터	031-828-0832	남원고용복지+센터	063-630-3915
수원고용복지+센터	031-231-7864	군산고용복지+센터	063-450-0639
안양고용복지+센터	031-463-0761	부안고용복지+센터	063-580-0515
안산고용복지+센터	031-412-6600	익산고용복지+센터	063-840-6551
성남고용복지+센터	031-739-3170	김제고용복지+센터	063-540-8405
평택고용복지+센터	031-646-1205	목포고용복지+센터	061-280-0541
춘천고용복지+센터	033-250-1975	해남고용복지+센터	061-530-2900
강릉고용복지+센터	033-610-1923	순천고용복지+센터	061-720-9169
속초고용복지+센터	033-630-1909	광양고용복지+센터	061-798-1908
원주고용복지+센터	033-769-0942	여수고용복지+센터	061-650-0150
태백고용복지+센터	033-550-8645	제주고용복지+센터	062-609-8660
삼척고용복지+센터	033-570-1906	서귀포고용복지+센터	062-609-8660
영월고용복지+센터	033-371-6261	대전고용복지+센터	042-480-6000
부산고용복지+센터	051-860-2100	공주고용복지+센터	041-851-8507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051-760-7244	세종고용복지+센터	044-861-8992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051-330-9945	논산고용복지+센터	041-731-8661
창원고용복지+센터	055-239-0960	충주고용복지+센터	043-850-4035
울산고용복지+센터	052-228-1942	제천고용복지+센터	043-640-9322
김해고용복지+센터	055-330-6434	청주고용복지+센터	043-230-6700
양산고용복지+센터	055-379-2430	천안고용복지+센터	041-620-7448
진주고용복지+센터	055-753-9090	보령고용복지+센터	041-930-6243
통영고용복지+센터	055-650-1800	서산고용복지+센터	041-661-5603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정책 자료실 ▶ 중장년 정책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응원합니다!

발 행 일 2021년 8월

발 행 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디자인·제작 열림기획(주) TEL. 044) 868-5055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1인당 최대 720만원지원

분기별 90만원 X 2년간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고용센터